

서울고등법원 2015. 11. 13 선고 2015나8560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변론 종결 2015. 10. 21.

판결 선고 2015. 11. 13.

제 1 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3가합7933 판결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 부분 석탑 1㎡, 위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 부분 비석 1㎡, 위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3 부분 석탑철제보관함 6㎡, 위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4 부분 비석 1㎡, 위 도면 표시 17, 18, 19, 20,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5 부분 납골묘 2㎡, 위 도면 표시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6 부분 철제 가건물 10㎡, 위 도면 표시 25, 26, 27, 28, 2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7 부분 수도펌프장 4㎡, 위 도면 표시 29, 30, 31, 32, 33, 34, 2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8 부분 1층 양철판 가건물 26㎡, 위 도면 표시 35, 36, 37, 38, 3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9 부분 2층 양철판 가건물 31㎡, 위 도면 표시 39, 40, 41, 42, 43, 44, 45, 46, 3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0 부분 1층 법당 110㎡, 위 도면 표시 47, 48, 49, 50, 4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1 부분 2층 법당 73㎡, 위 도면 표시 51, 52, 53, 54, 5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2 부분 석등 1㎡, 위 도면 표시 55, 56, 57, 58, 5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3 부분 종탑 7㎡, 위 도면 표시 59, 60, 61, 62, 5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4 부분 법당 43㎡, 위 도면 표시 63, 64, 65, 66, 6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5 부분 법당 18㎡, 위 도면 표시 67, 68, 69, 70, 6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6 부분 소각장 9㎡, 위 도면 표시 71, 72, 73, 74, 7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7 부분 은진미륵 8㎡, 위 도면 75, 76, 77, 78, 7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8 부분 석탑 1㎡, 위 도면 표시 79, 80, 81, 82, 7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9 부분 제단 9㎡, 위 도면 표시 93, 94, 95, 96, 9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1 부분 목재 가건물 17㎡, 위 도면 표시 97, 98, 99, 100, 9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2 부분 차고 12㎡, 위 도면 표시 101, 102, 103, 104, 105, 99, 98, 10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3 부분 양철건물 49㎡, 위 도면 표시 106, 107, 108, 110, 109, 10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4 부분 천막차고

22㎡, 위 도면 표시 110, 108, 112, 111, 1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5 부분 천막창고
17㎡, 위 도면 표시 113, 114, 115, 116, 1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6 부분 가건물 24㎡을
각철거하고,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단, 위 도면 표시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8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0 부분 토지 71㎡ 제외) 토지 1,997㎡를 인도하고,

(나) 피고 C, D, E, F, G, H, I, J은 각 1/8 지분에 관하여 별지 도면 표시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8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0 부분 기와지붕

벽돌건물 71㎡를 철거하고, 위 선내 20 부분 토지 71㎡를 인도하라

[원고는 피고 C, D, E, F, G, H, I, J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위 피고들의 지분을 특정하지 않은 채
청구하였는데, 건물의 공유자들이 부담하는 철거의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라 할 것이어서 각
공유자가 건물 전체의 철거의무를 부담하면서 각 공유자가 자기의 지분 한도 내에서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각 1/8 지분에 관하여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2) 예비적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C, D, E, F, G, H, I, J은 각 1/8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1 내지 26항 기재 각
목적물을 철거하고, 별지 도면 표시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토지 2,068㎡를 인도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을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11면 17~19행의 "2 K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망인에게 B사찰 건물이 K 소유라고 하였을 뿐이고, 위 O 임야의 소유명의자는 다르다고 알려준사실"을 다음과 같이 다시 쓴다.

② K은 매매계약 당시 망인에게 '... 소유주가 한국에 오면 사찰 부지를 보시(증여)할의사가 있다. ... 25년 이상 B가 토지를 사찰부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이의 도 없었고, 토지 소유자 역시 독실한 불자로서 무상으로 토지를 제공해 왔었고, 토지를 사찰에 시주할 계획도 있다'고 말한 사실(피고들의 답변서, 이 점에 비추어 볼 때사찰부지 사용은 사용대차관계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 제1심 판결문 12면 8행 아래 다음을 추가한다.

피고 C 등은 망인이 1989. 1. 30. K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 대웅전을 매수한 이래 20년 이상 B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사찰부지를 점유하여 왔으므로, 위 부분 토지에 관한 지상권을 점유취득시효하였다고 항변한다.

타인의 토지에 관하여 공작물의 소유를 위한 지상권의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그 토지의 점유사실 외에도 그것이 임대차나 사용대차관계에 기한 것이 아니라 지상권자로서의 점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표시되어 계속되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와 같은 요건이 존재하는가의 여부는 개별사건에서 문제된 점유개시와 공작물의 설치 경위, 대가관계,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 그후의 당사자간의 관계, 토지의 이용상태 등을 종합하여 그 점유가 지상권자로서의

점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실질이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1996. 12. 23.

선고 96다7984 판결).

피고 C 등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망인이 이 사건 사찰부지에 지상권을 설정하려는 의사로 점유하여 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찰부지 사용은 사용대차관계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고의영, 판사 임은하, 판사 남인수

목 록

순 번	별지 도면 표시	목적물	면적 (m ²)
1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1 부분	석탑	1
2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2 부분	비석	1
3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3 부분	석탑 철제 보 관함	6
4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4 부분	비석	1
5	17, 18, 19, 20, 17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5 부분	납골묘	2
6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6 부분	철제 가건물	10
7	25, 26, 27, 28, 25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7 부분	수도 펌프장	4
8	29, 30, 31, 32, 33, 34, 29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8 부분	1층 양철판 가건물	26
9	35, 36, 37, 38, 35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9 부분	2층 양철판 가건물	31
10	39, 40, 41, 42, 43, 44, 45, 39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10 부분	1층 법당	110
11	47, 48, 49, 50, 47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11 부분	2층 법당	73
12	51, 52, 53, 54, 51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12 부분	석등	1
13	55, 56, 57, 58, 55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13 부분	종탑	7
14	59, 60, 61, 62, 59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14 부분	법당	43
15	63, 64, 65, 66, 63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15 부분	법당	18
16	67, 68, 69, 70, 67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16 부분	소각장	9
17	71, 72, 73, 74, 71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17 부분	은진미륵	8
18	75, 76, 77, 78, 75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18 부분	석탑	1
19	79, 80, 81, 82, 79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19 부분	제단	9
20	83, 84, 85, 86, 87, 88, 89, 83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20 부분	기와지붕 벽 돌건물	71
21	93, 94, 95, 96, 93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21 부분	목재 가건물	17
22	97, 98, 99, 100, 97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22 부분	차고	12
23	101, 102, 103, 104, 105, 99, 98, 101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23 부분	양철건물	49
24	106, 107, 108, 110, 109, 106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24 부분	천막 차고	22
25	110, 108, 112, 111, 110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25 부분	천막 창고	17
26	113, 114, 115, 116, 113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26 부분	가건물	24

도면



